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단계별 집행계획(변경) 수립 보고

의안 번호	제354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1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

- 단계별 집행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 수립)에 의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
 - 1단계 : 3년 이내 단기사업
 - 2단계 : 3년 이후 중·장기사업
- 현재(2021~2023) 우리시는 시장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 사업 20개와 그 외 2단계로 추진 중임

< 우선순위 >

- ① 1순위 : 정책사업과 연계된 도로
 - ※ 공공청사 및 관광지 등 진입도로, 지역간 연결도로, 도시개발사업 등
- ② 2순위 :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 등 정비가 시급한 도로
 - ※ 교통정체,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도로
- ③ 3순위 :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
 - ※ 시민과의 대화, 반상회 건의사항 등

- 의사결정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 후, 지방의회의 의견청취
- 현재 추진중인 사업(설계·보상, 사업포함), 市정책사업,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을 1단계로 계획하고,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사업 탄력적 추진
- 나. 1단계 집행계획 변경 추진내용

○ 1단계 집행계획 신규 추가 대상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	위치	사업량	사업비	시설결정일	비고
계	5개소			149,385		
1	하성중로1-5, 6호선 (시도12호선)	하성면 전류-원산 마곡사거리	B=20m, L=3,100m	49,000	2009.01.14	
2	월곶중로3-8호선 (해강안 일주도로)	월곶면 성동 -하성면 전류	B=12~15m, L=3,500m	38,000	2022.01.03	
3	양촌광로3-4호선	한강신도시 -산업단지	B=40m, L=1,654m	43,777	2007.09.03.	
4	김포대로3-8호선	풍무동 승가로 -월드메르디앙	B=25m, L=340m	16,300	2007.09.03.	
5	대곶중로1-4호선	월곶면 갈산사거리 -오리정	B=20m, L=350m	2,308	2009.01.14.	

○ 1단계 집행계획 잔류 대상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	위치	사업량	사업비	시설결정일	비고
계	10개소			223,770		
1	대곶중로3-8호선	거침-약암	B=18.5m, L=6,500m	56,110	2011.12.29.	
2	하성중로2-3,4호선	마곡-시암	B=15m, L=6,500m	43,500	1977.01.27.	
3	월곶중로3-6호선	고막-용강	B=12m, L=4,200m	19,500	1978.12.21.	
4	양촌광로3-5호선	태가장앞	B=40m, L=500m	37,840	2007.09.03.	
5	대곶중로3-9호선	팔거리	B=10m, L=720m	8,930	2011.12.29.	
6	통진대로3-2호선	마송택지 -거물대리	B=25m, L=340m	20,190	2005.01.05.	
7	대곶중로3-2호선	울생리	B=12m, L=1,370m	11,000	2004.10.04	
8	김포중로3-25호선	풍무동 -검단신도시	B=12m, L=440m	9,700	2007.09.03	
9	김포중로1-6호선	걸포4지구	B=20m, L=980m	5,000	1986.04.19.	
10	김포대로3-38호선	감정동 흙풀앞	B=25m, L=480m	12,000	2007.09.03	

다. 1단계 집행계획 변경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사업대상	사 업 비	비 고
당 초	2021~2023	20	188,070	9개 완료
변 경	2024~2027	15	373,155	5개 추가 10개 제외

3. 관계법령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 수립)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※ 법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 수립)

-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※ 시행령 제9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·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시의 재정여건이나 현재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 (잔류사업 10개)을 최대한 완료한 후, 신규 사업(5개)은 최소화로 추진

나. 추가 예산 확보계획(2024~2027년)

총	잔류사업 (10개)	신규사업 (5개)
233,201백만원	125,222백만원	107,979백만원

※ 사업비 근거 : 2023년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(도시계획과)

5. 향후 추진계획

- 2024. 11월 : 단계별 집행계획(변경)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
- 2025. 02월 :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(시보, 홈페이지) 및 주민 열람
- 2025. 03월 :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(1회 추경)
- 2025. 05월 :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

소관 실·과·소		건설도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건설도로과장 양수진
	팀장 직위·성명	도로건설2팀장 최태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서기보 차수진(☎2338)